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268호, '21.6.15. 공포)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대상 첨단기술·첨단제품 투자 기업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 인센티브 제공,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신설 규정 반영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안 제5조의4 신설)

- 1) 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시 신청대상 산업의 개요·현황, 선정 필요성, 육성 또는 특화발전 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 근거를 마련
- 2) 핵심전략산업 선정 관련,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산업·외국인 투자·지역·도시정책 분야 전문가로 15인 이내 선정평가단 구성

나. 입지인센티브 제공대상 확대(안 제11조의4, 제15조, 제16조)

- 1) 개발사업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조성

토지 공급가격을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대상을 반영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입주국내복귀기업에 제공하던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자금지원, 수의계약 혜택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대상을 반영

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 규정 반영(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1) 기존 시·도지사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던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신산업의 육성·지원, 혁신과제 발굴 등의 고유사무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반영
- 2)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 등으로, 시행령에 인용된 일부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라.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외(안 제11조의4제5항 [별표1], 제19조)

- 1) 혁신전략 수립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발굴된 복합용지(용도가 다른 2개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 도입, 경상거래 신고의무 면제 금액 확대(2→10만불)를 시행령에 제도화

마. 법조문 삭제에 따른 위임 규정 정비 등(제21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제10호 삭제, 안 제6조의5제2항제4호, 제31조제3항제26호)

- 1) 과거 법 개정으로 삭제된 법조문(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2, 제29조,

산업발전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누락된 위임규정 정비

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누적회차 적용 기준 마련 등(안 제33조 별표2 제1호나목, 제2호가목·나목)

-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과태료 가중처분시 기준 중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보(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제2021-95호)하여 관련 기준 마련
- 2)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시행령에서 인용된 일부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받으려는 경제자유구역청은 그 선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산업의 개요 및 현황
2. 신청대상 산업의 선정 필요성
3. 신청대상 산업의 육성 또는 특화 발전 방안
4. 신청대상 산업 선정시 기대효과
5.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적·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산업·외국인투자·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15명 이내의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5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국인투자와 국내복귀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으로 한다.

3.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을 각각 “주요입주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6조제5항”을 “법 제16조제6항”으로, “개발사업시행자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을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9조 중 “2만달러”를 “10만달러”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27조 및”을 “법 제3조의4·제27조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발사업”을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법 제27조의4제7항”을 “법 제27조의5제7항”으로 한다.

4.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자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4제1항”을 “법 제27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6제1항”을 “법 제27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6호 중 “법 제27조의6”을 “법 제27조의7”로 한다.

별표 1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복합용지	○ 감정평가액(단, 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는 조성원가로 한다.)
--------	---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합용지”란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6조제5항”을 “법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4(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받으려는 경제자유구역청은 그 선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신청대상 산업의 개요 및 현황</u> <u>2. 신청대상 산업의 선정 필요성</u> <u>3. 신청대상 산업의 육성 또는 특화 발전 방안</u> <u>4. 신청대상 산업 선정시 기대효과</u> <u>5.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참고자료</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적·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산업·외국인투자·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15명 이내의 핵심</u>

	<u>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③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6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u>중소기업협동조합</u> 또는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u>사업자단체</u> 로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u>조합원이나 사업자</u> 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4. ----- ----- <u>중소기업협동조합</u> ----- ----- ----- ----- ----- <u>조합원</u> -----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9조의7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생략)
3. 제6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등) ①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

1.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2. (현행과 같음)
3.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

4. ----- 경제자유구역-----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1. 2. (생략) 3. <u>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u> 4. <u>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u> 5. <u>외국인투자자와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u> ② (생략) 제16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① 삭제 ② (생략) ③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u> 4. <u>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u> 5. <u>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u>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부분 전단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
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국유재산
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
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야 한다.

⑤ (생략)

⑥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
행자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국유·공
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
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
과할 수 없다.

-- 주요입주기업-----

-----.

④ -----

-- 주요입주기업-----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6조제6항-----
----- 주요입주기
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

1. · 2. (생략)

⑦ (생략)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정기구의 장”이라

1. ·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 10만달러

-----.

<삭 제>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투자규모, 투자시기 및 종사자
의 수

③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
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
되, 미리 해당 행정기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
준에 따른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일부
터 10년이 경과하여 외국인 전
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는 법 제27조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사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받은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생략)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

----- 법 제3조의4·제27조 및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자

④ -----
-----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

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
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의4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
계와 재정) ① 법 제27조의6제1
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
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생략)

제30조(퇴출업종 등) ① 법 제29
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
제의 발굴 등-----

-----.

⑤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의5제7항-----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 법 제27조의5제1
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
계와 재정) ① 법 제27조의7제1
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또는 시설

2.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3.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4. 기술이전이나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

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 9. 삭제 10. <u>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고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u> ② (생략) ③ 시·도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1. ~ 25. (생략) 26. <u>법 제27조의6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회계의 관리</u> 27. ~ 29. (생략) ④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u>법 제27조의7</u>----- ----- 27. ~ 2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연 락 처	(044) 203 - 4612